

해외환자유치사업 업무참고 매뉴얼

2014.12

목 차

의료법 등 외국인환자 관련 법령 일반 / 01 |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	3
2. 외국인 환자유치 병상수 제한	6
3.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해당 여부	7
4.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문제	9
5. 외국인환자 사망시 대응	15
6.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문제	19

사증·출입국 관계 / 21 |

7. 메디컬비자	23
8. 사증발급인정서	24
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필요서류	25
10.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26
11. 외국인 등록	27
12.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체류	29
13.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신청	31
14. 사증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33
15.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36
16. 질병 등 인도적 자유로 인한 체류허가	38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 / 41 |

17.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43
18.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46
19.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47
20. 입증책임의 완화	49
21. 수술동의서 상의 면책 조항	51
22. 의료분쟁 및 각종 계약상 분쟁에 대비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53
23. 의료사고 배상보험	54

국민건강보험·진료비 / 57 |

24. 외국인 신생아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59
25. 재외동포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요건	60
2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의 보험료 산정	61
27.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62
28.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63
29.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64
30. 외국인환자 진료비 적정성	65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기능 및 이용 안내 / 67 |

31.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의 기능 및 목적	69
32.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메디컬 콜의 기능	71
33. 세계 의료관광 동향 뉴스 및 자료 제공	73
34. 중국의 외국의사 단기 의사허가증	76

35.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참고 매뉴얼	81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82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82
(3) 등록 요건	83
(4)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83
(5) 구비 서류 접수처	86
(6) 등록증 교부 절차	86
(7) 등록 필수 정보 변경	86
(8) 등록증 재발급	87
(9) 폐업/휴업/재개업	87
(10) 등록 관련 문의	88
36. 등록유치기관의 실적보고의 의무	89
(1)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90
(2) 유치기관 정보포털 시스템을 통한 유치기관 등록	90
(3) 기관 이전, 대표자 또는 기관명이 바뀐 경우	91
(4)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91
(5) 영문등록증	91
(6) 유치실적 보고	91
(7) 제출한 유치 실적 조회	92
(8)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의 편리한 통계 기능 제공	92
(9)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명단 조회	92
37. 유치 및 실적보고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	93

I

의료법 등 외국인환자 관련 법령 일반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 법령

저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무역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사업관계상 중국쪽에 지인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 분들 중 몇몇 분을 그 분들의 필요에 따라 한국병원에 소개시켜 드리고 병원에서 일정 소개료를 받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의 주된 일은 무역업이기에 가끔 하게 되는 이 일(환자소개)을 위해 거창하게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하는 것이 번거로울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또 그 근거 법령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

- 2009년 의료법을 개정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여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등록 등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업무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자가 반드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나 경영의 주체와 일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는 판례가 있습니다.(2003.09.05. 2003도 2903) 따라서 지인분을 병원에 소개시켜주시더라도 수수료를 받는 등의 이익을 취하신다면 꼭 등록하셔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법 〉

제27조의2(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업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 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3항제2호 외의 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본조신설 2009.1.30]

< 의료법 시행령 >

제42조(업무의 위탁)

②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5>

1. 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업무(등록 요건 검토는 포함되며, 등록 여부 결정 및 등록증 발행·재발행은 제외한다)

2. 법 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실적 보고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2.4.27.>

2. 외국인환자유치 병상수 제한

저는 2009년에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지방의 중소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첫 해에는 우리 병원을 방문하는 외국인환자의 수가 많지 않았으나, 최근 몇 달 간 외국인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을 한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외국인환자의 비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없습니다. 단, 1인실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기관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함에 있어 법적인 비율 제한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관련규정

〈 의료법 〉

제27조의2(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등)

-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18>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9조의5(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법 제27조의2제5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법 제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수의 100분의 5를 말한다. 이 경우 병상 수를 계산할 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에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경우에는 그 병상은 병상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4.9.19]

3.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해당 여부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시술이 2010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간한 ‘2009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우수의료기술 디렉토리 북’에 실렸습니다.

디렉토리 북이 발간된 후 저희 병원은 저희 병원의 의료기술이 디렉토리 북에 실린 사실과 디렉토리 북의 내용 일부를 다른 설명이나 선전문구를 첨가함이 없이 그대로 넣어 안내 전단을 만들었습니다. 아울러 저희는 위 안내 전단을 병원 로비에 비치하여 환자 등 방문객에게 배포했고, 또한 같은 내용을 요약한 문구를 병원 현관에 있는 전광판에 약 5분 간격으로 게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과 같은 지역에 있는 병원 및 의원 몇 곳에서 최근 저희 병원의 전단이나 전광판 내용이 법에 어긋난다고 말하며 저희에게 전단 배포 및 전광판 게시 중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와 같이 전단을 배포하거나 전광판에 일정한 내용을 게시한 것을 ‘광고’라고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또한 말씀드린 전단이나 전광판의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 의료법에는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의료인 · 의료기관 · 의료법인’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들도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의료광고는 할 수 없습니다.
- 의료법은 ‘광고’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표시·광고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전단이나 전광판도 광고의 수

단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광고에 해당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으로 족하므로 객관적인 사실을 가공이나 가감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행위도(설사 그것이 공적으로 발표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광고’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법 〉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①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②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1.30>
 - 10.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 ③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 ④ 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기준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치료 후 귀국한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단서 발급 문제

약 1년 전 저희 병원을 방문한 외국인환자가 전화로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위 환자의 진료를 직접 담당한 의사입니다.

아울러 위 환자는 한국에 자신의 가까운 지인이 살고 있으니 위임장, 동의서 등 의무기록의 대리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보내겠다고 말합니다. 환자의 지인으로 하여금 진단서를 대리발급받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통상 진료와 동시에 또는 그 직후에 진단서를 발급하거나 과거의 진료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환자를 다시 진찰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진단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이나 지난 시점에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니 다소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환자가 요구하는 것처럼 지인으로 하여금 대리 발급을 받게 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답

-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지는 않았지만 전화 등을 이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스스로 듣고 판단하여 처방전 등을 발급하였다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2013.4.11. 선고 2010도1388 판결)
- 원칙적으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할 수는 없습니다.
- 그러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인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 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관련규정

〈 의료법 〉

제17조 (진단서 등)

-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1.30] [[시행일 2010.1.31]]]
- ②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 ③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④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產)한 것에 대한 출생·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07.7.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3.19]]

제21조(기록 열람 등)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2010.1.18>

1.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2.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3.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

- 중략 -

③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④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의료기관이나 진료기록이 이관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환자의 과거 진료 내용의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근거로 하여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09.1.30>

⑤ 의료인은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09.1.30>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한다. 이하 제40조제2항에서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제23조(전자의무기록)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을 안전하게 관리·보존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③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의료법 시행규칙 〉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하 이 조에서 "친족"이라 한다)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그 밖에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다만,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록열람이나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 이 경우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

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 ③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의 친족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환자가 본인에 관한 진료기록 등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9.]

5. 외국인환자 사망시 대응

교통사고를 당한 외국인환자가 저희 병원에 도착 후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하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도착 4분 후 사망). 현장에서 치명상을 입고 구급차 후송 중에도 생존 상태로 병원에 도착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의료사고나 분쟁이 염려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이와 같이 외국인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어떠한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평소에 이와 유사한 문제는 어디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답

- 외국인이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대체로 아래의 몇 단계에 따라 행정적 수속 및 시신처리를 하게 됩니다.
 - ① 본국의 유족에게 연락하여 유족이 입국하게 하거나, 만약 입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팩스 등을 통하여 유족위임장을 받음
 - ② 사망진단서 발급
 - ③ 외교통상부에서 사망진단서에 확인을 받은 후 본국대사관으로부터 사망확인서를 발급받음(송환하는 경우 본국송환에 관한 확인서 발급)
 - ④ 시신 처리
 - ※ 사망자 유가족을 초청하기 위해 유가족에게 보낼 서류: 본국대사관에서 받은 사망확인서 1부를 해당국 유족에게 우편으로 보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 시신 처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본국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보실(15777-129)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시신 등의 본국송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망자의 본국 대사관과 우리나라

라 세관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으나, 기본적인 절차만을 간략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간이통관절차 적용

- 유해 및 유골은 간이통관절차에 의해 운송됩니다.
 - 따라서 유해·유골, 시신을 국외로 운송할 경우 송품장, 간이통관목록 또는 우편물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 ※ ‘송품장’이란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말하며, 송장(送狀)이라고도 합니다.
- ※ 세관에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통상 세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세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 화물터미널(세관창고)에 제출하면 됩니다.

- 유형별 송환 절차

- 유해(시신)를 송환하는 경우
 - ※ 유족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위임장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시신을 방부처리합니다.
 - ※ 사체인도서 또는 시체검안서, 방부처리확인서, 대사관확인서를 구비한 후 항공사로부터 항공화물운송장을 발급받습니다.
 - ※ 시신을 입관한 후 항공사에 인도합니다.
- 화장 후 유골을 송환하는 경우
 - ※ 화장을 한 유골을 항공·화물회사(대한항공, 한국공항, 아시아나, DHL 등)에 특수화물로 운송합니다.

○ 환자 국적별 시신 처리 방법

〈일본〉

- 1) 사망 진단서를 진료 담당의가 작성
- 2) 사망하신 분의 유족, 보호자가 한국에서 화장할 것인지 방부제 처리를 해서 일본에 모실 것인지 결정, 일본에 화장문화가 있어서 대부분 화장 절차가 더 쉽고 비용도 저렴

3) 일본대사관에 유족 분을 모시고(1분) 화장동의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사망진단서, 사망하신 분의 여권, 유족 본인 여권지참)

가. 화장 시

- 일본대사관으로부터 화장동의서를 받음
- 원무팀장 또는 담당자가 장례식업자에게 연락
- 화장할 날짜를 정함. 화장의 경우에는 사후 최소한 24시간이 지나야 함.
- 유골함을 일본에 가져갈 때 공항에서 신청 안 해도 됨
- 화장터 이용 + 장리사 + 유골함 = 100만원~150만원

나. 방부제 처리시 국제 장의사에 연락 (국제 장의사가 필요한 서류, 검사, 공항수송 처리)

- 일본대사관에 가서 방부증명서 발급
- 24시간 지난 뒤에 서울 적십자 병원에 옮겨서 유체를 검사 (1~2일)
- 공항까지 수송
- 비용: 400만원

〈러시아〉

- 주러시아 대사관에 환자 사망신고
 - 사망 진단서 진료 과장이 작성, 번역공증
 - 외무부 **아포스티유*** 신청 발급, 러시아대사관 제출
 - 사망하신 분의 유족, 보호자가 한국에서 화장할 것인지 방부제 처리를 해서 러시아에 모실 것인지 결정. 화장 절차가 더 쉽고 비용도 저렴
 - 주러대사관에 유족 분을 모시고 (1분) 화장동의서 발급신청서를 작성
(사망진단서, 사망하신 분의 여권, 유족 본인의 여권지참)
 - 최종 러시아 영사의 심사 후 2가지 서류 발급(감염여부확인서/시신확인서)
 - 최종 이송
- ⇒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병원과 대사관, 화장시설 또는 국제방부처리(국제장의사) 업체를 통해 위 국가와 비슷한 절차를 밟아 처리

* 아포스티유 협약

1. 개요

- 명칭 : Convention Abolishing the Requirement of Legalization for Foreign Public Document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 개요 : 협약 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국제적 활용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인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
- 발효시기 : 1961.10.5 헤이그에서 작성, 1965.1.24 발효
- 가입국현황 : 미·영·불·독·일·중(홍콩, 마카오만 적용) 등 92개국(2007년 5월 현재)
- 우리나라에 대한 발효 : 2007.7.14

2. 절차비교

기존 절차	Apostille 발효 이후 절차
공문서 발급→우리정부확인(필요시)→주한공관 확인→해당국가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공문서발급→외교통상부확인→협약가입국에서 공문서로서 인정

3.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4. 아포스티유 신청 구비서류

- 아포스티유 발급 신청서
-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고자 하는 공문서 또는 공증된 문서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인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외무부장관이 행하는 영사관계문서의 확인사무 수수료 규칙에 의한 수수료

5.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문서의 번역문 필요 여부

- 원칙적으로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이 되는 문서는 우리 공문서임. 번역문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요구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인이 문서를 제출할 국가에서 번역문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대처하여야 함
- 번역 공증된 문서는 아포스티유 발급대상

6.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심사내용

- 협약에 따라, 외교통상부는 발행된 문서의 날인된 관인 또는 서명이 원본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 이를 위해 외교통상부는 정부기관, 공증인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대조에 사용할 관인과 서명을 등록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음.

7.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에 관한 자세한 정보

- www.0404.go.kr
- 전용 상담전화 (02) 2100-7500 , (02) 3210-0404

6.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문제

저는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입니다. 병원 진료를 받을 일이 생겨 부득이 대한민국 국적자이자 건강보험 가입자인 친척의 건강보험증을 한 번만 빌려서 쓰고자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더라도 확인을 하지 못한 의료기관이 제재를 받는 일은 있어도 실제로 건강보험증을 사용한 환자 본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떳떳한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실제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아픈 척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인 제 친척이 받을 수 있었을 진료를 제가 대신 받는 것에 불과하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답

-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서 요양급여(건강보험을 통한 진료)를 받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명백히 금지됩니다.
-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는 반대로, 국민건강보험법 상 가입자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에, 건강보험증 대여 등 부정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과태료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귀하가 타인의 건강보험법을 빌려서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고, 귀하에게 건강보험증을 대여한 그 친척 역시 마찬가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빌려 쓰는 행위는 절대로 삼가시기 바랍니다.

II

사증 · 출입국 관계

7. 메디컬 비자

한국을 치료목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지요? 또, 질병의 중증 정도에 따라 치료기간 또는 입원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 법무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시행 이후로('09.5.1) 외국인환자의 입국편의를 위해 외국인환자 전용 비자(메디컬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 발급 대상 : 의료법상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하기 위해 입국하는 환자 및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하는 배우자 또는 가족
 - 종류 : 90일 이하 단기는 C-3-M, 91일 이상 장기는 G-1-M(6개월~1년)
 - 기간 연장 : 계속적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 체류기간 연장
 - ※ C-3-M 자격으로 입국 후 91일 이상 체류 시는 G-1-M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 및 외국인등록 필요
- 외국인환자의 사증신청 편의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도 허용
- 외국인환자의 국내 체류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각종 신청 및 수령의 대리 허용
- 초청한 외국인환자의 불법체류자 발생 정도에 따라 초청을 제한,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관리책임 강화
- 중증환자가 아니어서 90일 이하의 진료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 체류 메디컬비자(C-3-M)나, 관광비자(B-2), 단기방문비자(C-3) 비자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8. 사증발급인정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사증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사증발급인정서’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이 환자를 위해 그것을 대신 신청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답

- 사증(비자)은 원칙적으로 직접 재외공관에 신청하여 영사 등의 심사를 거쳐 발급 받도록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 또는 국내의 초청자는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세종로, 울산, 동해, 속초만 해당)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사증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1회의 사증발급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 출입국관리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통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그와 같은 통지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직접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는 재외공관의 사증발급 심사에 앞서 사증발급의 요건을 미리 검토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결국 사증발급인정서는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단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은 초청자의 자격으로 외국인환자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필요서류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외국인환자에 대한 메디컬비자 발급을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구비서류를 어디에 제출해야 하는지(지역별 담당관청 등)도 알려 주십시오.

답

- 의료법 제27조의 2 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라 등록을 마친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초청자의 자격으로 외국인 환자를 위해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초청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신청대상
 - 「의료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로 등록한 자의 초청에 의해 국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을 할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자와 간병 등을 위해 동반 입국의 필요성이 있는 배우자 또는 가족
- 신청방법
 - 유치의료기관 등이 온라인(HuNet)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 받은 후, 피초청자가 재외공관에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제시하면 사증발급 (외국인 환자 본인이 재외공관에 직접 신청할 경우도 가능)

※ HuNet :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고 처리과정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된 시스템 (www.visa.go.kr)

 - 제출서류 :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 여권사본, 병원예약확인서, 재정입증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 사증종류 : 단기사증(C-3-3, 090, 단수, 더블, 복수), 장기사증(G-1-10, 1년이내, 복수)

10. 환자 동반자에 대한 사증 발급

진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려는 외국인환자입니다. 메디컬 비자를 신청할 때 간병 등을 도와 줄 동반자에 대한 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몇 명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가족이나 친인척이 아닌 단순한 친구도 동반비자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 주십시오.

참고로, 외국인의 출입국이나 사증 문제 등을 유선상으로 전문적으로 안내하는 별도의 콜센터 같은 것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답

- 동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러나 동반비자의 발급 요건에 “배우자 등”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발급 대상은 친인척 정도로 제한된다고 해석되고, 따라서 친구나 직장동료, 이웃 등 단순한 지인의 경우 동반비자 발급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귀하께서 동반자로 생각하는 분에 대한 비자발급이 가능할지 여부를 비자신청시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전화로 안내 받으시려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외국인 등록

치료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등록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외국인등록은 어떤 경우에 해야 하는지, 메디컬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등록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해야 하는지요? 아울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에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외국인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등 체류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입국 일로부터 90일 이내에(체류자격 변경의 경우에는 자격변경 허가일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외교·공무·협정수행자 및 그 가족,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의 경우 외국인등록 의무가 면제됩니다.
 - 치료 목적으로 메디컬 비자(C-3-M 또는 G-1-M)로 입국한 외국인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게 될 경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사항의 변경에 대한 조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 첫째, 등록 외국인은 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 및 유효 기간, 그 밖에 법무부령(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사

항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둘째,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사는 곳; 내국인의 경우 ‘주소’에 해당)를 변경한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체류지(이사 후 살게 된 곳)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소장·출장소장에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2.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체류

서울에 있는 병원입니다. 교통사고로 저희 병원 응급실을 방문하여 현재 입원 중인 외국인환자를 위해 대신 질문을 드립니다. 위 환자는 1개월 체류기간의 여행비자 (C-3 단기종합)로 입국하여 관광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입원으로 인해 사증 상의 체류기간인 1개월을 넘겨 체류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입원을 얼마나 더 오래 해야 할지 현 상황에서는 가늠하기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몇 개월 이상으로 장기화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위 환자는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국내체류를 계속할 수 있을지요?

답

- 말씀하신 환자 분께서는 사증(비자) 상의 체류기간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그에 합당한 체류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환자는 사고로 인해 진료 목적의 체류가 필요하고, 체류기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이므로 G1(기타자격) 비자의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 말씀하신 환자와 같이 예기치 않은 사고로 인한 국내체류 필요성에 따라 G1(체류기간 상한 1년)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심사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1) 여권
 - 2)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
 - 3) 컬러 증명사진 (3.5cm X 4.5cm) 1장
 - 4) 수수료
 - 5) 사고발생 사실 확인서

6)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 체류자격 변경은 본인이나 가족 등 신청을 위임받은 자만이 신청 가능하며, 가족인 경우 본국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참고로, 90일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13. 체류기간 연장신청과 체류자격 변경신청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입니다. 저희 고객인 외국인들은 단기 메디컬 비자인 C-3-M 자격으로 입국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유치한 고객들 중 최근에 체류기간을 30일로 하는 C-3-M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환자가 있습니다. 문제가 된 위 환자는 당초에는 입국 후 20여 일 내에 간단한 수술 및 모든 치료를 마치고 관광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관련 질환의 추가 발견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병원 진료만으로도 최소 1달 이상이 더 필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현재의 예상으로는 체류기간을 한 달 정도만 늘릴 수 있다면, 즉 입국 후 60일 정도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면 원하는 진료를 모두 마치고 출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절차를 밟으면 좋을지 알려 주십시오.

참고로, 만에 하나 위 외국인환자의 체류가 입국시로부터 3 ~ 4개월을 넘어 장기화된다면 특별히 다른 조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답

- 귀하가 기대하시는 것처럼 문제의 외국인환자가 입국시로부터 60일 이내를 체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면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30일)이 만료되기 전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만에 하나 귀하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위 환자의 체류가 3 ~ 4개월을 초과하여 장기화된다면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아시는 바와 같이 C-3-M 비자의 1회 체류기간 상한은 90일입니다. 그러므로 위 환자의 입원 계속으로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면 현재 보유한 사증의 체류기간 상한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증제도의 본래 취지에 따르면 외국인이 새로운 체류자격을 얻고자 할 경우 출국 후 해당 체류자격의 사증을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국내에서 해당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경우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위 환자의 경우에도 입국시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91일 이상) 체류해야 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소에 체류자격의 변경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 체류기간 연장과 체류자격 변경을 알기 쉽게 비교하여 설명 드리면, 외국인이 기존 체류자격에 고유한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늘리고자 할 때에는 전자를 신청하면 되지만, 기존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체류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후자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14. 사증면제국 소속 외국인의 치료 목적 장기체류

저는 일본인으로, 서울의 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면서 대한민국-일본 간 사증면제협정 체결에 따라 무비자로 입국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협정상의 체류기간인 90일을 넘겨서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병원을 소개해 준 에이전시로부터 '체류자격 변경신청'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체류자격 변경은 특정한 유형의 사증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다른 유형으로 변경을 원할 때에 신청하는 것인 반면에, 제 경우에는 처음부터 아예 사증을 받지 않고 입국하였으므로 체류자격의 '변경'과는 무관하지 않을까요?

제가 치료 목적으로 계속 체류하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나 세부절차는 어디에 문의하면 되는지, 그리고 그런 절차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한편, 90일을 넘겨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주민등록 비슷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으로서 입국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A-1에서 H-2에 걸쳐 다양한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입국·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예외 없이 어떠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게 되며, 체류자격이라는 것이 반드시 사증(비자)의 유형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사증면제'라는 체류자격을 정하고 있고, 그에 해당하는 기호는 'B-1'입니다. '대한민국과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이 바로 B-1인 것입니다.
- 한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은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에 대하여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을 '협정상의 체류기간'으로 정하고 있고, 귀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우 협정상의 일반적 체류기간은 90일입니다.
- 위 설명을 귀하에게 적용해 보면, 귀하는 사증면제국 소속 국민으로서 '사증면제(B-1)'라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입국하였고, 체류자격에 따른 1회 체류기간의 상한은 90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이처럼 귀하는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으므로 만약 귀하가 90일을 초과하여 계속 한국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체류자격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에이전시 측에서 귀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신청에 필요한 서류나 세부적인 절차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문의하실 수 있으나,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심사시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음).
 - 1) 여권
 - 2) 체류자격 변경 신청서
 - 3) 컬러 증명사진 (3.5cm X 4.5cm) 1장
 - 4) 수수료 (5만원, 외국인등록비 1만원)
 - 5) 장기 치료에 관한 의료기관 소견서
 - 6) 장기치료 체류 비용 조달 능력을 증명하는 서류

- 체류자격 변경은 외국인 본인이나 가족 등 위임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가족인 경우 본국에서 발행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외국인이 병증 악화로 거동이 불편하며 한국에 신청을 위임할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치료중인 의료기관에 신청을 위임할 여지가 없으나,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임 가능 여부를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등록 문제입니다. ‘외국인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 이상 장기체류 하는 외국인의 체류지 등 체류에 관한 사항 전반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체류자격변경을 받아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고, 이 경우 등록할 시기는 자격변경 허가일입니다.

15.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는 경우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입니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의 국민은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각 국가별 체류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사증면제협정으로 인한 경우 외에도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한 몇 가지 사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가 그에 해당하는지요?

답

- 2014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나라는 총 100개국입니다. 협정체결국의 목록 및 국가별 체류기간은 아래 주소에 따른 인터넷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그에 해당하는 나라의 국민이라 하더라도 영리행위나 취업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사증을 받고 입국하여야 합니다.
-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35&catSeq=161&showMenuId=16
- 사증 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열거된 각 사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는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사이트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위 인터넷 주소 그대로 이용).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
 - 지정에 의한 무사증 입국
 - 빈번 출입국자
 - 제3국 여행 통과객
 - 유럽여행 중국인 관광통과

- 환승관광외국인 무사증 입국허가[2014.9.15.]
- 일본인 관광/방문
-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
- 재입국허가 소지자
- 국제기구 발급여권 소지자(LAISSEZ-PASSER, 라세파세)
- APEC 기업인여행카드(ABTC, APEC Business Travel Card)

16. 질병 등 인도적 사유로 인한 체류허가

단기관광 비자로 한국을 여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외국입니다. 비자 연장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불법체류 상태인데, 치료를 마칠 때까지 만이라도 적법하게 한국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답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치료가 끝날 때 까지는 귀하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사실상 크지는 않습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신병치료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자격(G-1)으로 체류를 허가하거나 특별체류허가를 해 주는 예가 상당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이제부터라도 적법하게 체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기타자격(G-1)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G-1은 산재·질병·소송 등의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결을 위해 한시적으로 부여되는 자격입니다.
-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출 서류들은 아래와 같으나, 심사 시 추가 자료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1) 여권
 - 2) 체류 자격 변경 신청서
 - 3) 컬러 증명사진 (3.5cm X 4.5cm) 1장
 - 4) 수수료
 - 5) 사고발생 사실 확인서
 - 6) 의사진단서, 소견서

- 귀하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해야만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적법하게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귀국하실 수 있습니다.

III

의료분쟁 관련 법률문제

17.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역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유치업체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의료사고에 대한 논란이 많다보니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번거로운 소송보다 더 유리한 분쟁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조정이나 중재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신청하는 건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외국인환자도 이 기구에 의해서 의료분쟁이 해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 2011년 4월 공포되어 2012년 4월 시행이 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동법에 의하여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동법에 의하면,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보건의료인에게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여 의료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분쟁의 예방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 또한 제도적으로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여 조정과 소송을 별개의 절차로 규율하며,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지급금에 대하여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불하는 제도(손해배상금대불제도)를 마련하는 등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가. 의료사고를 보건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정의함
- 나.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도 보건의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외국인에 대하여도 적용함
- 다. 의료분쟁을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특수법인 형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라 한다)을 설립함
- 라.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함
- 마.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분야별, 대상별 또는 지역별 조정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조정부는 조정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을 결정하도록 규정함
- 바.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정중재원에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함
- 사. 조정부가 조정결정을 하는 경우 환자의 손해,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의 과실 정도, 환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도록 함
- 아. 이 법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법원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자. 보건의료인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는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차. 국가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의료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도록 함.
- 카. 조정이 성립되거나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조정중재원이 미지급금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대불제도를 운영함
- 타. 보건의료인이 업무상과실·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절차 중 합의로 조정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조정·중재신청절차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공식 홈페이지



18.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등을 관할하는 국제재판소

평소에 외국인 환자를 비교적 많이 진료하는 의료기관입니다. 현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분쟁의 대비 내지 예방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기본적인 법률 지식을 확인·공유해 두고자 하는 차원에서 질의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적인 다툼이 생기면 외국인 환자는 자신의 본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싶어 하고 의료기관 측은 우리나라 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분쟁과 관련하여 특정한 국가에 속하지 않은 채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해 줄 국제재판소를 찾을 수 있나요? 예컨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곳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러한 사건을 맡아 처리해 줄 국제변호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선임할 수 있을지도 알려 주십시오.

답

- 현재 개인 간의 민사분쟁을 다루는 ‘국제 재판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료분쟁을 비롯한 민사적인 다툼이 발생할 때 당사자는 특정 국가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그 국가의 법률이 지정하는 특정 국가(법원이 속한 그 나라 자체일 수도 있고 다른 나라일 수도 있음)의 법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당사자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특정 국가 법원은 그 나라의 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에게 그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사건을 심리하여 판결을 내릴 것입니다.
- 다만, 환자로서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9.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는 이마와 턱을 높이고 눈에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모 성형외과 의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외국인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담 후 턱과 이마 부위에 실리콘 보형물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 쌍꺼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2년 정도가 지나면서부터 턱 부위에 삽입된 실리콘이 대각선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실리콘 보형물이 입안 내로 일부 돌출되어 큰 불편과 불쾌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 후 현재의 상태에 관하여 다른 병원의 의사로부터 상담을 받고 제 나름대로 여러 경로로 알아 본 결과 담당 의사가 수술 과정 그 자체에서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와 같이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았더라면 굳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 미리 충분한 설명을 해 주지 않은 의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책임 추궁이 가능할지요?

답

-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을 할 때에는 물론이고 그 밖에 나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의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환자 측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성형수술의 경우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 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더욱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자는 의료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입증책임의 완화

미국인 고객들을 많이 상대하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입니다. 미국인 환자 한 명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를 당했는데,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결국 소송을 통해 시비를 가려야 할 형편입니다. 위 미국인 환자는 자신의 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판결 집행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재산 대부분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 환자는 ‘미국 법원은 의료사고를 둘러싼 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부담을 덜어 주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국법 하에서는 의료소송의 입증책임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원칙이 존재하는지요?

답

-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행위상 과실(주의의무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합니다.
- 본래 손해배상에 관한 민법이나 민사소송법 상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과실의 유무 및 내용,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등은 원고(환자) 측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영역에 속하고 의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등의 특성 때문에 의료문외한인 일반인이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환자측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태도를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 입증책임 완화 원칙을 최초로 도입한 1995년의 일명 ‘다한증 사건’은 환자가 다한증 이외에 특별한 질병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여 왔고 수술 전의 사전검

사에서 특이증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다한증 수술 중 사망한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대법원은, 원고측이 피고측의 “과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하여 망인의 사망의 원인을 밝혀 내지 못하였다고 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판례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 여기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해를 돋기 위해 위 다한증 판결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합니다. 위 사건에서는 집도의가 수술 일부를 다른 의사들에게 맡기고 늦게 수술에 참여한 점, 피부와 근육을 절개해 둔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을 기다린 점, 수술 후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거품·경련 등을 간호사에게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경과 후 조치함) 등이 드러났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이 바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원칙 하에서 환자는 의료인의 잘못과 사망이나 건강악화등의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히 밝혀낼 필요가 없고, 위와 같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입증책임을 다한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의료인이 책임을 벗어나려면 자신의 과실과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하게 됩니다.

21. 수술동의서 상의 면책 조항 효력여부

향후 외국인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는 주로 중증 질환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환자를 타깃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됩니다. 이에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을 받을 외국인환자로 하여금 먼저 “수술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병원 측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가 해당 언어로 기재된 동의서에 자필로 싸인하게 한 후 수술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동의서를 작성·제출한 환자를 수술하던 중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저희 병원은 동의서의 그와 같은 문구로써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요?

답

- 서울고등법원은 1981. 3. 6. 선고 80나3988 판결에서 “원고 3의 보호자인 원고 2가 본건 수술 전에 그 수술 후에 발생하는 사태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위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수술동의서)의 기재는 그 해석상 집도의사가 최대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술을 시행하였음에도 결과가 불량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지 집도의사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의 배상책임까지도 포기한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한 바 있고,
- 같은 법원 1983. 5. 13. 선고 82나1384 판결에서는 환자가 수술에 앞서 수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고 서약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수술이 급박하지 않았던 점, 의사의 과오로 인하여 부작용이 야기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서약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상 집도

의사의 위법행위를 미리 유서하고 그로 인한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 각 판결에서는 문제된 서약서 내용의 ‘해석’, 즉 당사자가 어떠한 취지로, 어떠한 의도에서 그 문서를 작성했는지를 주로 문제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만약 환자와 의사가 의료행위에 앞서서 여하한 경우에도, 즉 의사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책임을 면제한다는 의사로 서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문서의 내용은 공서양속(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 따라서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그와 같은 서약서를 작성 · 제출받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서약서가 의료인의 과실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기관의 책임을 면하게 할 가능성은 결코 크지 않습니다.

22. 의료분쟁 및 각종 계약상 분쟁에 대비한 표준계약서의 필요성

저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을 마친 종합병원에서 외국인환자 진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내 환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환자의 경우에도 환자가 방문하면 계약서 등 특별한 문서를 작성함이 없이 곧바로 진료에 착수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환자 진료를 둘러싼 의료사고를 보다 철저히 대비하기 위해서는 진료에 앞서 먼저 진료계약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들었습니다. 진흥원과 같은 공적인 조직에서 진료계약서의 샘플 등을 만들어 보급 할 계획이 있는지요?

답

- 진흥원은 법조계, 의료계, 학계 등에 걸친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과 자문을 거쳐 진료계약 체결에 참고할 표준양식을 완성하였고, 그 밖에 수술동의서, 사전의료지시서, 진료기록 열람·복사 관련 서식 등 의료기관에서 응용할 각종의 기타양식을 개발하였습니다.
- 진료계약서 및 병원과 유치업자 간의 계약서 등의 각 양식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쉽게 접근·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식홈페이지(<http://www.khidi.or.kr/>)의 ‘동향과 정보→의료서비스 발간물→해외환자유치 코너에서 진료표준 양식집 등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 등에서는 진료계약서 등의 표준양식을 이용·참고하기에 앞서 홈페이지에 함께 게시된 해설(설명)자료를 반드시 읽고 그 내용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23. 의료사고 배상보험

저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하기 위해 복지부에 등록을 마친 유치업자입니다. 제가 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유럽 등 서양 국가입니다. 그런데 저와 거래하고 있는 해외 에이전시들이 제일 많이 문의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병원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이를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들이 ‘의료사고 배상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거든요. 또,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의료사고 배상보험은 외국인환자까지도 담보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 '09년 60,201명이던 외국인환자 수가 '13년에는 21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13년도 전체 외국인환자 중 건강보험공단의 중증진료로 분류되는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의 상병 진단을 받은 중증상병 환자와 입원환자는 총 38,724명으로 외국인환자의 의료사고 발생가능성 또한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미국·유럽 등 선진 국가 환자들의 경우 소득과 물가 등의 차이로 높은 배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 우리 병원들과 의료인들의 보다 높은 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0년 하반기부터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이 그 담보 대상에서 북미·EU·호주 등의 국가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10년 하반기부터 기존 배상보험의 지급대상 범위가 내국인과 중국·몽골 등 저개발 국가의 환자로 제한되어, 의료기관에서는 선진국 환자 담보를 위해 기존의 배상보험 외에 별도의 옵션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지급관련 비용은 의료기관 자체부담의 방식과 보험상품가입을 통한 비용의 (의료기관+보험사+공제회)분담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주요 (의료사고) 클레임에 대비하여 의사나 의료기관에게 의료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이 법이나 의료윤리 또는 실무지침을 통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강제하는 국가로는 체코공화국, 덴마크(일부 자치단체 및 코펜하겐 병원연합회 제외),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헬스케어 의사만 해당), 스페인, 스웨덴(무과실 보상시스템을 운영), 영국(치과의사의 경우 치과협회(the General Dental Council)를 통해 가입), 미국(일부 주 제외), 터키(법률 명시) 등이며, 의료윤리나 실무지침을 통해 강제하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료사고 배상보험 또는 공제회 가입이 개별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재량사항이어서 보험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료기관 기준 평균 약 30%수준, 2010.2).
- 외국인환자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손해배상금 지급기전 마련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권익보호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현을 위해서 복지부와 진흥원은 보험연구원, (재)보험사등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요율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담보하는 내용의 내외국인 통합보험 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2010.12).
- 이 보험상품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를 담보하고 있으며, 2년마다 손해율을 점검하여 손해율이 기준보다 낮을 경우 기존 보험료의 일정액을 환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형사합의금과 변호사 보수 등 방어비용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클레임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외 소송 진행시 현지에서 조사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글로벌 네트워크(현지 클레임부서 및 손해사정업체)를 활용하여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또한, 진홍원과 메리츠화재가 제휴를 맺고 ‘외국인건강검진안심보험’을 2014.01.월 상품화하였습니다. 이 상품은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검진을 받는 도중 내시경 중 위천공, 수면유도제 사용 이상반응 시 부작용을 보상합니다.
- 보험가입의 효과로는 첫째, 의료기관은 보험가입을 통해 의료분쟁 해결관련 재원을 보험사와 함께 분담하여 실제적인 리스크 전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분쟁해결 관련 법률서비스를 보험사 등의 전문가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마케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환자들에게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함께, 선진국처럼 보험제도를 통해 사고시 안정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습니다.
- ’11년 4월, 논의를 시작한지 23년 만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의료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어 의료소송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환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손해배상금의 액수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재)보험사가 명시한 대로 외국인환자 특약 옵션을 추가하여 실제적으로 의료사고 배상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이처럼 의료분쟁관련 비용의 급격한 증가를 의료서비스체계 내에서 합리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진료비·약제비·건강보험료·민간의료보험 상품 시장 확대 등 국민 전체 의료비용 상승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총의료비 상승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리스크 관리 및 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관련부처·의료공급자간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건의료서비스의 국제화라는 국제흐름에 맞추어 리스크 관리의 책임은 이제 더 이상 개별 의료기관이 아니라 정부 및 관련기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인식의 전환 하에 각 자자체에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합리적인 배상제도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IV

국민건강보험 · 진료비

24. 외국인 신생아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외국인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경우 어떠한 조건 하에서 언제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경우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도 간략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신생아가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모두 또는 한 사람이 그 신생아의 출생에 앞서 자격을 취득한 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 그러한 경우 신생아는 출생한 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합니다.
- 그 밖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다만,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이더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하다면 한국에 입국한 날에 가입자격을 얻습니다.
 - 출국으로 자격을 상실하고 나서 재입국한 경우
-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을 상실한 경우 그 자격상실일 이후 언제라도 가입 신청이 가능

25. 재외동포가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한 요건

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며 살아 온 40대 회사원으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사의 한국 출장소로 발령을 받아 1년 가까이 한국에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이고, 한국 근무를 반 년 이상 먼저 시작한 다른 미국인 동료들은 이미 직장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출장소에 처음 출근한 직후 저희 회사의 인사 담당부서에는 저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위해 외국인등록을 하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입국했고, 입국 직후에는 ‘국내거소신고’라는 것도 마쳤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을 별도로 해야만 하는지요?

답

- 귀하는 외국인으로서 재외국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외국국적 동포’로서 재외동포에는 해당합니다. 귀하가 한 국내거소신고는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 외국국적 동포도 다른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고,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채용된 사람이면 가입 대상이 됩니다.
-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치고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귀하와 같은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로써 마찬가지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귀하는 이미 국내거소신고를 마쳤으므로 외국인등록 없이 곧바로 직장가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26.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의 보험료 산정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외국인입니다.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내국인과 마찬가지의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어떤 비자로 입국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형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귀하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외국인도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 제7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도 첫째, 국내에 영주하는 외국인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내국인인 지역가입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둘째, 영주 외국인이 아닌 경우 보험료 산정기준을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소득(임금)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 D-3(산업연수), D-5(취재),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E-10(내향선원), H-2(방문취업)] : 보수월액에 부과당시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소득(임금)이 파악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임금)으로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아래 제2호의 기준에 의하여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체류자격 D-6(종교)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30%를 경감합니다.
 2. 소득(임금)이 없거나 파악이 어려운 외국인 [체류자격 : D-1(문화예술), D-2(유학), D-4(일반연수), F-3(동반) : 보험료는 전년도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다만, 체류자격 D-2(유학), D-4(일반연수)의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경감합니다.

27.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상실 사유

국민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지 1년이 넘은 외국인입니다. 저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한 번 받았고, 얼마 전에 그와 같이 연장된 체류기간을 넘긴 상태이지만 사업상 돌보아야 할 일들이 있어 출국을 몇 주 정도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독감 때문에 동네 병원을 방문했더니 병원 측에서는 제가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한국에 계속 살고 있는 상태에서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종료될 수도 있나요?

답

-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기간을 넘겼을 경우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에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상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설명대로라면 귀하는 현재 자격을 상실한 상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그 밖에 외국인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의 경우 그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강제퇴거명령이 발부된 날의 다음날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단, 그 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심사결정이 확정된 날까지는 제외됩니다.
 - 정해진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이 실제로 출국을 하면 그 다음날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1월 이내의 일시출국은 제외됩니다.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되는 경우 그 다음날에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합니다.
 -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자격을 상실합니다. 다만, 국내 영주 외국인(F-1, F-2, F-3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예외입니다.

28. 한국 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의 직장가입 제외 신청

외국인이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더라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있는지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직장가입 배제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등을 알려 주십시오.

답

- 크게 두 가지 경우에 가입 제외가 가능한데, 첫째, 국가 간 사회보장 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컨대, 프랑스 국민은 2007. 6. 1. 이후로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둘째, 외국인이 국내에 근무하는 기간 동안 외국의 법령, 외국의 보험 또는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와 같은 적용제외를 신청하려면 해당 외국인의 사용자(고용주)가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할 서류를 경우를 나누어 설명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의 법령, 보험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가. 외국 법령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서나 보험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받는 경우

- 가. 근로계약서 등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나.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 의료비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한글번역본 포함) 1부
- 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건강보험에서 탈퇴하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9.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가입

한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입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려 주십시오.

답

-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이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아직 3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유학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경우 가입이 허용됩니다.
 - 그러나 체류기간이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역가입자 자격취득·변동신고서와 함께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각 지사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체류자격	제출서류
유학(D-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일반연수 (D-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1부 · 연수 · 입학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외국인유학생의 보험료는 전년도 말의 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체류자격이 유학(D-2)인 경우에는 산정된 보험료의 50%를 감면받습니다.
- 참고로, 보험료는 매달 25일에 선납하시게 되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30. 외국인환자 진료비 차별성

사업상 한국에 장기체류하게 된 외국인입니다. 그 동안 한국 병원을 몇 번 이용하는 과정에서 제가 같은 내용의 검사나 치료에 대해 한국인들에 비해 높은 진료비를 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병원 측에 왜 저를 차별하는지 이유를 따져 물었더니 병원 측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서 차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 환자들은 거의 전부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반면 저는 비가입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병원들이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저와 같은 외국인에게 더 높은 진료비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제 친구 한 명은 모 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몇 가지 시술의 가격을 인터넷 사이트에 뚜렷하게 게시해 놓고도 외국인인 제 친구로부터 게시된 것보다 높은 진료비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적어도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분야에서는 병원들이 그런 식으로 차별적으로 진료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합니까?

답

- 먼저, 귀하가 한국인들에 비해 더 많은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귀하께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병원 측의 해명은 옳습니다.
- 대한민국은 전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건강보험의 문호를 상당히 넓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한국에서 직장가입자 적용사업장에 근무하거나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 귀하께서 입국한 지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지역가입자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되면 한국인들과 똑같이 진료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음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급여항목)에 관해 설명 드립니다. 의료법은 각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목록을 책자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고지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 그러한 고지 의무와 초과징수 금지 규정 역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진료비 중 비급여항목에 한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인 외국인에 대한 진료비를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건강보험 급여항목의 수가나 책자 등으로 미리 고지된 목록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또한 국제진료센터를 이용함으로써 통역, 투어 등 의료이외의 서비스 요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V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기능 및 이용 안내

31.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의 기능 및 목적

러시아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방문하여, 입원까지 하게 되었는데 각종 안내서 및 동의서의 서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서식을 저희가 제공 받을 수 있는지요? 또한 음식도 러시아식을 준비해야 하는데 식단 레시피가 있으면 자료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답

-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는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국제의료사업단 내의 부서로, 외국인환자가 한국의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가지게 되는 의문점이나 불편 불만사항 등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
- 또한, Information Center는 외국인환자 외에 외국인환자를 보호하거나 고용하고 있는 분, 의료기관, 유치업자 등 국제 의료서비스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 및 진료전반에 걸쳐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외국인환자 캐어 매뉴얼을 개발하고, 외국인환자 식단 개발과 전문가 양성도 실시하여 외국인환자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캐어 매뉴얼 Part I이 개발 되었으며 외국인환자의 일반적 캐어, 입원전 서비스, 입원시 캐어, 퇴원시 캐어와 그에 필요한 서식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따라가시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 <http://medicalkorea.khidi.or.kr/> 의 정보자료실 no.19 : 외국인환자 Care Manual Part I
- 외국인환자 식단은 서양, 러시아, 중국,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 환자식·치료식(당뇨병 및 심혈관계 질환)·영양서비스 지침·국가별 메뉴 주문서식 개발을 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따라가시면 해당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http://medicalkorea.khidi.or.kr/>의 정보자료실 no.34-37:

외국인환자 식단개발 – 서양러시아중국중동 대상 식단 및 영양관리지침개발

32.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메디컬 콜의 기능

외국인환자를 많이 진료하는 병원입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외국어에 능통한 전문 상담요원을 활용하여 메디컬 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한지요?

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보실이 담당하는 메디컬 콜(1577-7129)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 러시아어, 아랍어의 6개 언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아쉽게도 메디컬 콜은 원칙적으로 무료 통역이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 전문 상담요원들은 5개 외국어 능력을 기반으로 메디컬 콜을 이용하시는 고객들께 최대한의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와 외국인환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돋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 예컨대, 출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문서 번역 작업을 대신해 드리지는 못하는 반면에,
 - 국내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로부터, 또는 외국인환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저희가 대신 전화를 걸어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 드리거나 언어 문제로 인해 일방이 타방에게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타방의 자국어로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시켜 드리는 일은 찾은 편이고,
 - 또한 외국인환자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겪거나 기타 급히 의사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순차적인 3자 전화 연결을 통한 간접적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도 합니다.
- 한편, 의료전문 통역사를 찾고 있거나 통역인력 선발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흥원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도움을 받아 전문 의료통역사를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메디컬콜을 담당하는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는 전화상담 외에도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와 관련된 국내외 최신 정보의 수집·공유 등 다양한 ‘정보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나, 전화를 통한 상담서비스의 대표적인 내용만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비자 발급·출입국 절차 등에 대한 안내
 - 외국인환자와 의료기관 간 의사소통 조력
 - 언어별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병원에 대한 안내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안내
 -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에 대한 안내

33. 세계 의료관광 동향 뉴스 및 자료 제공

2009년 의료법 개정 후 초기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입니다. 국내의 유치업체들은 성공한 선발 업체나 참고할 기존의 사업 모델을 찾기 어려운 시장 내에서 스스로 합리적인 수익구조를 창출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회사도 초기 몇 개월 간은 국가나 지역 별로 명확하게 유치 대상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국내외의 여러 업체, 현지인 등과 제휴하여 최대한 많은 수의 다양한 외국인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으나, 최근에는 각국의 경제 전반과 보건의료 시장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뚜렷한 타겟을 설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환자유치 활성화에 도움이 될 만한 국내외의 최신 정보에 대한 습득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때마침 저희가 거래하는 모 병원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소식지를 받아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건산업동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용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 ‘보건산업 동향’은 월 1회 발간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소식지로 진흥원의 6개 지사(미국, 영국, 중국 등)의 소식은 물론 글로벌 보건산업 정책 동향, 주요 행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식홈페이지(<http://www.khidi.or.kr/>)의 ‘동향과 정보’ 코너에서 이미 발간된 ‘보건산업 동향’은 물론 수출입정보, 글로벌시장 정보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식홈페이지(<http://www.khidi.or.kr/>)의 ‘동향과 정보’->의료서비스 발간물->해외환자유치’ 코너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medicalkorea.khidi.or.kr/>)의 정보자료실 코너에서 최근까지의 외국인환자유치사업관련 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목	다운로드
관련법 및 제도	o메디컬비자 제도 및 사증발급인증서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8
	o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법규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7
관련 양식	o외국인환자 유치 및 소개에 관한 표준협약서(국문/영문)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41
	o등록 신청 관련 양식 모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6
	o외국인환자를 위한 후속 관리지침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1
	o진료계약서 양식(견본)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
	o진료계약서 등 표준양식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8
	o외국인환자 초청 확인서 및 구비서류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
보고서	o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의 이해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
	o외국인환자 Care Manual Part I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9
	o국제의료정보실 상담사례집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2
	o외국인환자 식단개발 - 서양·러시아·중국·중동 대상 식단 및 영양관리지침개발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4-37
	o글로벌헬스케어 중장기 발전전략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0
	o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의료분쟁 해결 방안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2
	o글로벌 헬스케어 이슈리포트 제 1호, 제 3호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1
	o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집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3
	o2010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집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40
	o2010년 해외보건의료 현황 조사 보고서 - 7개국 보건의료 현황 및 진료수가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3

기타 자료	o글로벌헬스케어 산업의 이해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4
	o2010 World medical travel news 통합호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0
	o해외 의료관광시장 동향(2011. 6~12)	
	o2010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지침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8
	o미국 내 환자유치업체 디렉토리북	
세미나 컨퍼런스	o아세안 지역 내 주요국가의 환자유치업체 디렉토리북	
	o국가의료브랜드 Medical Korea 그래픽 가이드라인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6
	o해외 의료시장 분석 및 홍보마케팅 세미나 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9
	o2010년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설명회 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15
	o2010년 민관합동워크샵 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1
	o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설명회 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4
	o제1차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개최 관련 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6
	o(제1회)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주제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3
	o(제2회)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주제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7
	o(제3회)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주제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28
	o(제4회)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주제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0
	o(제5회) 글로벌헬스케어 정책포럼 주제발표자료	http://medicalkorea.khidi.or.kr/-정보자료실no.39

34. 중국의 외국의사 단기 의사허가증

한국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의사입니다. 중국 병원측에서 계속 초청의사로 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의 외국 의사 단기 의사 허가증만 취득하면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주실 수 있는지요.

답

- <<외국 의료진의 중국내 단기 의료활동 임시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행의(行醫)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의료행위를 하려는 병원마다 ‘각각’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관련 규정 및 각 지방 정부가 제정한 외국의사 의료행위 자격 관련 규정을 따라야합니다.
- 중국은 지방자치가 발달하여 의료행위 허가증 역시 각 지방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북경의 경우 각각 1시간 정도의 까다로운 필기 및 구술시험을 보고 있으며, 상해의 경우 아무런 시험 없이 취업허가만으로 의료행위 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허가증은 등록된 도시에서만 유효하며 다른 도시에서 의료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시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즉, 해당하는 각 지역의 관련 위생행정 부문에 각기 등록해야합니다.
-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기간 연장을 하고자 하면 다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개인 자격으로 신청하고 주어지지만 개인 소유가 아닌 병원 소유로 인정됩니다. (근무예정 병원을 통해 위임 수속이 가능하며 그 병원이 보증을 서주어야 허가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은 분야는 허가증 취득이 비교적 쉬운 편이나 합자·합작 의료기관들의 진출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VI

외국인 유치기관 등록 및 실적보고

35.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참고 매뉴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등록을 마친 외국인환자 유치업체입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체를 대상으로 등록, 마케팅, 출입국, 의료분쟁 등에 걸쳐 다양한 교육행사를 하고 자료집 등을 개발해 왔다는 얘기를 선발 업체의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저희는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과 관련된 각종 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기본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아직 진흥원의 교육행사에는 참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설명회나 교육행사에서 배포되는 자료 외에도 외국인환자 유치업체가 업무에 참고할 만한 매뉴얼이나 가이드북 같은 것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참고 매뉴얼'을 파일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업무참고 매뉴얼 요약

(1)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등록 배경 및 목적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희망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등록요건을 검토하고,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하신 후, 구비 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대상 및 제한

- 외국인환자 유치활동의 허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에 한정하며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치활동이 불가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 및 별표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함)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됨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 상급종합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의료법 제27조의2제5항에 따라 병상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할 수 없음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5

(3) 등록 요건

의료법 제27조의2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의 다음과 같이 등록 요건을 마련하고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의료기관

유치하고자하는 진료과목의 전문의 1인 이상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 유치업자

○ 보증보험 가입 (1억원이상, 1년이상 가입)

○ 자본금 규모 1억원

○ 국내에 사무실을 둘 것

※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의4

(4) 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의료법 시행령 제 42조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

◆ 의료기관

- 등록 신청서(대표자 날인)
- 사업계획서 1부(별표2참조)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개설허가증 사본 1부

- 유치하고자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 재직 전문의의 명단(별표9)/자격증 사본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치업자

- 등록 신청서(대표자 날인)
- 정관 1부 (법인인 경우)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법인: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대차대조표 등, 개인: 은행잔고증명서 등)
- 사업계획서 1부(별표2참조)
- 보증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보증보험증권 원본)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표 2〉 자본금 확인 서류(예시)

설립유형	자본금증명	사실확인방법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자자본증자(유상증자) 	등기부등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여자본증자(무상증자) · 자본(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 · 회사내규 예산 확인서 ·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서
개인 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시대차대조표 · 대차대조표 	은행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금잔액증명서 	

〈보증보험 가입 및 절차〉

- 보장금액 및 기간

- 의료법 제27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3호에 의거 보증보험의 가입금액은 1억원 이상, 보험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함

- 보장방법 및 절차

- 보장방법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등록신청 전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에 상당하는 인허가 보증보험에 가입

※ 보험료율 : 보장금액의 0.585% (1년 1억 기준 585,000원)

- 보증보험 가입 (보증보험 가입내용)

- 보험계약자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닌 보험계약자가 되며, 또한 이 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자가 됨

- 피보험자

- 보험금 청구권자이며, 현재 등록 및 사업실적보고 업무의 위탁을 맡고 있는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으로 설정함(향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통하여 변경 가능)

- 보험업법에서 명시된 보증보험 업무를 취급하는 회사는 현재 “서울보증보험(주)” 1곳이며, 보험계약의 체결은 ‘사이버 지점(www.sgic.co.kr)’에서도 가능함

◆ 보증보험이 만료될 경우에는 만료일 7일전까지 아래의 자료를 제출할 것

- 보증보험 증서를 갱신하여 제출
- 자본금의 현재 유지 상태 증빙서류
- 국내 사무실 유지 상태 증빙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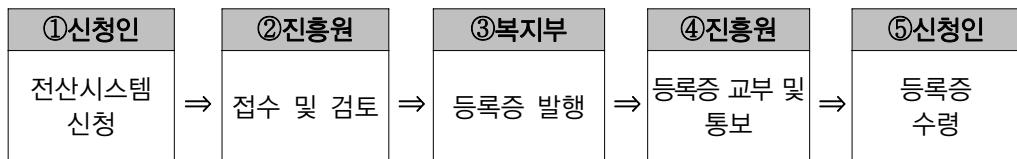
- 보증보험금으로 외국인환자 유치과정에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할 것

보증범위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의료기관에 소개 알선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외국인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5) 구비 서류 접수처

(363-951) 충북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로 187 (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

(6) 등록증 교부 절차 (20일 이내)



(7) 등록 필수 정보 변경

대표자/상호 명/소재지/진료과목(의료기관), 보증보험(유치업자) 등의 정보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유치기관 정보 포털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신청하신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 42조 등록 및 사업실적 보고 업무의 위탁

의료기관	유치업자
1. 의료기관 명/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등록증 원본/의료기관개설허가증(변경 후)	1. 법인명/소재지/대표자 변경 시 등록증 원본/법인등기부등본(변경 후)
2. 대표자 1인 운영 병원 대표자 변경 시 1.의 서류 + 전문의 자격증 사본	2. 개인의 상호 명/소재지 변경 시 등록증 원본/사업자 등록증(변경 후)
3. 진료 과목 변경 시 재직 전문의 명단(별표9)/전문의 자격증 사본	3. 보증보험 갱신 시(기간 연장 등) 보증보험증권 원본/임대차계약서/자본금 증빙서류

(8) 등록증 재발급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재발급 신청을 한 후, 신청서(별지 제9호의 6서식)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주시 바랍니다.

- 재발급 신청서(대표자 날인)
- 등록증 원본(훼손된 경우)

※ 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기 발급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증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을 반납해야함

(9) 폐업/휴업/재개업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등록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을 통해 신고한 후, 등록증원본 및 조치계획서(대표자 날인)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업	폐업	휴업 후 영업 재개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 조치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증 · 조치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개업 신고

(10) 등록 관련 문의

기타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등록 신청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정책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관련 문의 : 043)713-8232(유치업자), 8421(의료기관)

36. 등록 유치기관의 실적보고 의무

외국인환자 유치등록을 마친 병원으로, 의료법에 따른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이 단 한 명도 없는 경우에도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 등록취소 대상이 되는지도 알려 주십시오.

또한 매년 3월말까지로 되어 있는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에 따른 제재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

- 첫째,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은 실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실적보고를 해야 합니다. 실적이 없다는 사실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보고하시면 됩니다.
- 둘째, 현행법상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에 대해 유치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셋째, 등록 의료기관이 실적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의료기관이 그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 보고는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외국인환자 정보를 수시 입력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받고 환자 정보를 작성하여 실적보고 기간에 업로드하여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실적 보고 기간인 3월2일~31일에 입력 정보 또는 업로드 된 정보를 최종 보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보고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환자정보 입력 방법 및 코드 안내는 홈페이지 “유치실적 보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치기관 정포털시스템(<http://medicalkorea.khidi.or.kr>)소개

(1)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의 체계적인 사업 프로세스 구축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치실적 보고 시스템과 등록 시스템을 통합 개발한 전산시스템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접수와 실적 보고 뿐만이 아니라 유치사업 시작을 위한 필수 정보와 해외시장 동향 및 정부추진 사업 내용, 유치실적 통계, 업무 및 환자 케어 매뉴얼 등 다양한 보고서와 최신 정보 자료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2) 유치기관 정보포털 시스템을 통한 유치기관 등록

유치기관 정보포털 시스템에서 등록 신청을 하고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시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신규 등록→작성→완료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기타’ 선택)

※ 유의사항 : Internet Explore 버전 확인 및 필수 프로그램 설치

※ 단, 유치업자는 전산 신청 이전에 서울보증보험 “외국인환자유치사업 인허가보증보험”(최소1억 원 1년)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구비서류 우편 제출

(3) 기관 이전, 대표자 또는 기관명이 바뀐 경우

유치기관 정보포털 시스템에서 변경 신청을 하여 새로운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등록정보변경→필수정보변경→입력에서 변경되는 정보만 작성하여 완료를 클릭합니다.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등록증을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우편 제출

(4)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었을 경우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서 재발급 신청하여 새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등록정보변경→재발급→입력(국문)

※ 구비서류 우편 제출

(5) 영문등록증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서 영문등록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존 등록 기관인 경우, 로그인→등록정보변경→재발급→입력(영문)
- 신규 등록 기관의 경우, 영문증명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들과 같이 우편 제출하시면 됩니다.

(6) 유치실적 보고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서 외국인환자 정보를 수시 입력하거나, 양식을 다운로드받고 환자 정보를 작성하여 실적보고 기간에 업로드하여 보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적 보고 기간인 3월2일~31일에 입력 정보 또는 업로드 된 정보를 최종 보고 버튼을 클릭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보고 버튼을 클릭하지 않으면 데이터

전송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적 집계에서 누락될 수 있으니 이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은 실적 보고가 의무사항이니 반드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미보고시에는 시정명령과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환자정보 입력 방법 및 코드 안내는 홈페이지 “유치실적 보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제출한 유치 실적 조회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서 유치실적을 제출한 등록기관은 최종 보고한 자체 실적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유치실적보고→실적 조회→2010년 실적→조회

(8)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의 편리한 통계 기능 제공

유치기관 담당자들의 업무 효율성과 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고자 주요 지표별(국적, 연령대, 월별, 진료과별 등) 자체 실적 분석이 가능하도록 보고서 기능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그인→보고서→의료기관 통계

(9) 외국인환자 유치등록기관 명단 조회

유치기관 정보포털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되는 정보는 등록기관명, 주소, 연락처, 팩스입니다.

단, 등록 기관만 가능합니다. 로그인→보고서→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 조회

37. 유치 및 실적보고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입니다. 실적보고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응급 치과치료를 받으러 온 미국 국적의 4살 어린이가 있는데, 아버지는 미군입니다. 위와 같은 환자도 외국인환자 진료실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요?

답

- 의료법에 따른 유치 및 실적보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아래 표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고 환자마다 1단계 ~ 4단계의 각 사항을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유치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1단계 (건강보험)	2단계 (국적)	3단계 (거주지)	4단계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환자유치 대상 여부
건강보험 미가입	- 외국인 - 외국국적 동포 (시민권자)	국내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시민권자)를 하지 않은 경우	o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시민권자)를 한 경우	x
	국외			o
	- 재외국민 (영주권자)			x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x

- 주한 미군이나 그 가족은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환자 유치 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미군 가족 환자의 경우 유치대상인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실적보고에 포함시키시기 바랍니다.